

오피스텔 계약 안내문

■ 청약 당첨자 계약 일정 안내

계약일시		
정당계약 1일차	정당계약 2일차	정당계약 3일차
12/23(목)	12/24(금)	12/25(토)
계약장소		

당사 견본주택: **부천시 상동 529-49번지**

- ※ 본 계약 방문예약은 당첨자발표 (2021.12.22) 이후 가능 합니다.
- ※ 코로나 19로 인하여, 사전예약제로 운영 예정이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※ 정당계약 기간 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등호수에 대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※ 청약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■ 계약체결 서류 안내

구분	구비서류
본인 계약 시	① 계약금 입금확인서류(무통장입금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) ②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/*외국인의 경우:외국인등록증/*재외동포인 경우: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③ 주민등록표초본 1부(거주자 우선공급 당첨자의 경우) ④ 주민등록표등본 1부(외국인/재외동포인 경우: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/국내거주신고사실증명서) 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(용도:오피스텔 계약용/설계변경동의용, 본인발급용) ⑥ 인감도장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가능) ⑦ 정부수입인지 원본 1통
법인 계약 시	① 청약신청 접수증(접수증 원본) ②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(무통장입금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) ③ 법인등기부등본 1통 및 사업자등록증 1통 ④ 법인인감도장(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) 및 법인인감증명서 2통(용도:오피스텔 계약용/설계변경 동의용) ⑤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-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(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)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2통(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) ※ 직원 및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, 대리인 도장,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지참 ※ 외국법인일 경우:관련 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※ 외국인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:외국인 부동산상대용 등록번호 증명서(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 가능)
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	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(배우자, 직계존비속 포함)로 간주하며, 상기 공통구비서류 이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·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(용도 :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, 본인 발급용) - 위임장(견본주택 내 비치) -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- 가족관계증명서

- ※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(2021.12.09)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은 청약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
- ※ 신청자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접수된 청약 신청에 의한 당첨 건의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■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

- ※ 분양자들에게서는 분양대금(중도금 및 잔금 포함)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만약,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화를 받지 못합니다.

은행명	계좌번호	예금주	비고
KB국민은행	642201-04-120273	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	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(예: "101동 1001호" 당첨자 홍길동 → 1011001홍길동)

- ※ 지정된 계약금 약정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,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.
- ※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※ 계약금 납부 : 동·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(견본주택 수납 불가)
- ※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(동·호실 및 계약자 성명 기재 : 예)101동 1001호 홍길동 → 1011001홍길동)하여야 하며, 상기 분양대금 납부 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.
- ※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